

분쟁조정 및 PL관련 판례 사례



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 사례(연소기 중심)

사례 15) 난방기 오작동으로 인한 보상 요구

-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79. 11월 청구인의 포도밭에 설치한 난방기를 2000.1월 중순부터 가동 중 같은 해 2. 15. 난방기가 오작동하여 피청구인 논산대리점 직원 000가 점검한 후 이상이 없었으나,
- 같은 해 2. 29. 동 난방기가 다시 오작동하여 청구인의 포도나무의 꽃눈 및 잎이 타는 피해가 발생한 바, 위 000가 당일 포도밭의 고온피해를 확인하고 난방기의 오작동 원인이 기계식온도감지기 때문 일수도 있다고 하며 다음날 기계식온도감지기를 교체한 후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으나, 청구인은 이미 포도나무에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,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함.

1. 기초사실

- 청구인은 2000. 2. 29. 아침에 포도밭의 환기를 시켜 놓고 10~16시경까지 사고 포도밭을 비운 사이에, 난방기가 오작동 되어 포도나무의 꽃눈 및 잎이 고사되는 피해가 발생하여 위 000에게 연락한 바, 당일 17:30경 위 000가 고온에 의한 포도나무의 고사피해를 확인한 후, 난방기의 기계식온도감지기에 부착된 코드를 뽑아 작동을 중지시켰으며, 다음날 위 000가 동 난방기의 기계식온도감지기를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고 난방기의 오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가동하고 그 상태를 확인코자 하였으나, 청구인의 재가동 피해에 대한 보상각서를 요구하여 이상유무는 확인하지 못함.

- 같은 해 4.10. 소비자보호원 담당자 070이 사고 포도밭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, 사고 포도밭은 비닐하우스 사방 벽면을 제외한 난방기 통풍관 주변 및 포도밭 가운데 부분에서 고온피해가 심하게 발생하여, 포도나무의 새 꽃눈 및 잎이 고사되고 줄기가 뻗지 못한 것을 확인하였으며,
- 농업기술센터 특화작목 담당 000가 같은 해 4. 1과 4. 10.에 사고현장을 방문·조사하고 제출한 자문의견에 의하면, 「피해 입은 시점과 조사한 시점과의 시간적인 차이는 있으나, 고온피해를 입은 포도나무의 생육이 매우 불량하고 잎의 전개나 신초의 신장상태, 과일의 수정 및 비대상태가 매우 저조하였으며 사고당시에 발아되었던 신초는 전부 고사되어 수확량의 감소 등 농가소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함
- 소비자보호원 담당자 000의 조사에 의하면 이 건 포도밭은 피해 현황은 총 600평으로 260주 정도의 포도나무가 생육하고 있으며, 이 중 60주는 정상, 100주는 약간 피해, 100주는 차년도까지 피해가 예상될 정도로 고온피해를 심하게 입은 상태임.

2. 당사자 주장

- 청구인은 2000. 2. 15. 난방기가 처음 오작동 되었고 사고일인 같은해 2. 29. 10~16시 사이에도 난방기가 다시 오작동되어 포도나무의 꽃눈 및 잎이 고사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으며, 당일 17:30경 위 000가 현장에 도착하여 고온에 의한 포도나무의 고사피해를 확인하고, 난방기의 기계식온도감지기에 부착된 코드를 뽑아 작동을 중단시키고 다음날 해당 부품을 교체한 사실이 있는 만큼 난방기가 오작동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라고 하고,
- 피청구인은 사고 난방기는 1997. 10월에 판매하여 이미 품질보증기간(1년)이 지난 상태이고, 사고일인 2000. 2. 29. 17:30경 위 000가 사고 포도밭을 방문할 당시 난방기는 작동이 중단된 상태여서 포도나무의 고온 피해가 난방기의 오작동에 의한 것인지 청구인의 관리소홀에 의한 것인지는 알 수 없었으며, 사고 다음날 위 000가 난방기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동 난방기를 재가동 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이 난방기를 재가동할 경우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에 대한 보상각서를 요구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할 수 없었음. 따라서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였고 난방기의 오작동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



분쟁조정 및 PL관련 판례 사례

인의 보상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.

3. 판단

가. 피해발생 원인 및 책임 범위에 대하여

- 피청구인은 고온 피해의 원인이 난방기의 오작동이 아닌 청구인의 관리 소홀 때문이라고 주장하나, 2000. 2. 29. 난방기가 오작동 되었다는 청구인의 연락을 받은 위 000가 사고 포도밭에 도착하여 포도나무의 고온피해를 확인하고, 사고 원인이 기계식온도감지기의 이상일수도 있다며 동기기에 부착된 코드를 뽑아 작동을 중지시키고 다음날 새 부품으로 교체한 사실이 있고, 또한 고온 피해를 입은 포도나무가 난방기 통풍관 주변과 포도밭 가운데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난방기의 오작동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,
- 한편 농촌진흥청 표준영농교본에 수록된 시설포도 재배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의하면, “청구인이 재배하고 있는 시설포도 데라웨어는 내부 기온이 40도 이상에서 5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고온피해가 발생한다”고 하며, 하우스 내부가 정상적으로 환기가 된 상태라면 설사 난방기가 오작동 되었더라도 현재와 같은 고온 피해가 발생했을 개연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고, 또한 청구인은 같은 해 2. 15. 난방기가 오작동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동 난방기가 언제든지 오작동 할 개연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포도밭을 비워두는 등 관리를 충실히 하지 못함으로서 이 건 피해를 확대시킨 과실을 인정할 수 있음.
- 위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건 사고는 피청구인이 제작·판매한 난방기의 오작동에 의한 피해일 가능성이 있고, 청구인이 환기 등 포도밭 관리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, 청구인은 사고 당일 10시부터 16시까지 장시간 포도밭을 비워 관리를 소홀히 했던 점을 인정할 수 있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인 바,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책임부담비율을 7:3으로 봄이 상당함.

나. 품질 보증기간에 대하여

이 건 난방기의 품질보증기간 경과 주장은 비록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난방기를 판매한 시점이 1997. 10. 20.이나, 실제로 이 건 난방기의 설치완료 시점은 1999. 11월이므로 품질보증기간의 기산점은 1999. 11월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.

다. 피해금액에 대하여

● 2000년도 예상 피해액은 대전광역시 제공 대전지역의 3년간('96년~'98년) 포도밭 평균 조수입액에 의거 계산하면 23,575,488원으로 산정되며, 이 건 포도밭의 정확한 피해액은 수확이 종료되는 7월초가 지나야 알 수 있겠지만, 청구인의 포도 집하장인 00농협의 000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0. 6. 13. 까지 실제 소득액은 6,626,500원이고 향후 2,800,000원정도의 추가소득이 예상되어 금년소득액은 9,426,500원으로 추정된다고 한 바, 청구인의 2000년 예상 피해액은 예상 조수입액 23,575,488원에서 실제 예상 소득액 9,426,500원을 차감한 14,148,988원으로 추정됨.

● 2001년도 예상 피해액은 현 시점에서 명확하게 예상하기는 어려우나 포도나무의 일부는 2001년도까지 수확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에 대한 피해액은 금년도 피해액의 50%로 봄이 상당한 바, 그 피해액은 금년도 피해액 14,148,988원의 50%인 7,074,494원으로 추정됨,

라. 결론

피청구인은 위에서 확정한 금년도 피해액 14,148,988원과 2001년 피해액 7,074,494원에서 피청구인의 책임비율 30%에 상당하는 4,244,696원과 2,122,348원의 합계 6,367,074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임.

4. 결정사항

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0. 7. 29.까지 금 6,367,044원을 지급한다.

5. 조정 결과

불성립

